



의령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제890호 2024. 3. 20.(수)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의령군 규칙 제1248호 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 2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24-57호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9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24-376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 의령군 공고 제2024-380호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51
- 의령군 공고 제2024-382호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57
- 의령군 공고 제2024-391호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9

2024년 제2회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청년 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의령군수

의령군 규칙 제1248호

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청년센터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의령군 청년센터의 명칭은 “청춘만개”(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 시설로 청년 단기거주 시설인 “사각사각 청년하우스”(이하 “청년하우스”라 한다)를 둔다.

③ 청년센터 및 청년하우스는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

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청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방문접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 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경우

3.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
4.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청년센터 내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2항의 “청년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

년도

연번	접수일	신 청 자		신 청 내 용						승인 (불승인) 통보일	비고	결 재		부서 확인
		성 명 (단체명)	주 소	행사일시	대관장소	이용목적	이용인원					담당자	관리자	
							계	남	여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합니다.

2024. 3. 20.

의령군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3년도에는 재난이 2회 발생하여 피해액은 28백만원이며, 복구액은 4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풍수해 재난(호우·태풍)이 2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24명으로 5년 평균보다 1명 많았고,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 재난의 관측장비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CCTV, 수위계, 적설계 등 4종으로 50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정보전달체계는 음성통보시설, 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 등 3종으로 3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기경보시스템은 강수량계, 수위계, CCTV, 음성통보시설, 문자전광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활동내용을 지방일간지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은 206백만원이나 160백만원 확보되어 78% 확보되었습니다.
- 2023년도 조성액은 1,120백만원으로 전년도 814백만원보다 306백만원 증가하였고, 2023년도 집행액은 1,937백만원으로 전년도 1,155백만원보다 78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B등급으로 안전(위험)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같습니다.
- ◆ 그 밖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85개시설 중 67개시설이 내진 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78.8%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군의 재난관리역량 예·경보시설 관리 및 방재물자 확보,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기금 확보 등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였습니다. 한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의 추진실적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앞으로도 의령군은 재난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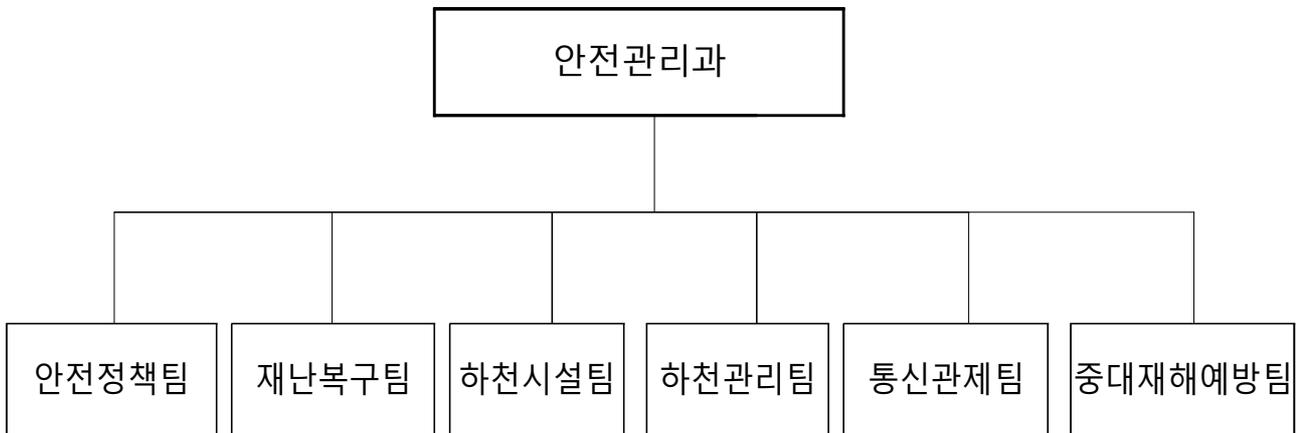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계		-사유시설 43세대 28,880	사유시설 43세대 48,716	
6.27~7.27	호우·강풍	-사유시설 36세대 25,825 ※ 위로금 7세대 포함	-사유시설 36세대 45,716 ※ 위로금 7세대 26,216 포함	지급완료
8.9~11 태풍 카눈	태풍	-사유시설 7세대 3,055	-사유시설 7세대 3,000	지급완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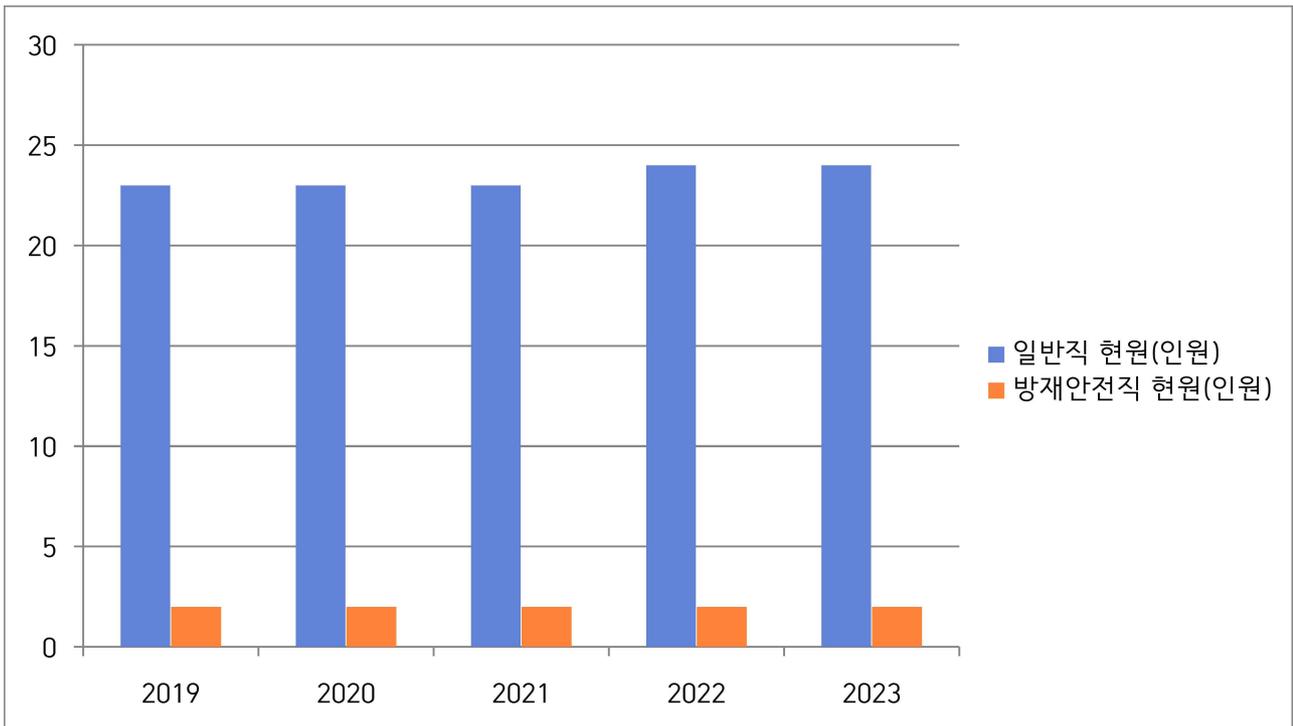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6	9	5	3
현 원	24	1	6	6	8	3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방 재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4	4	-	-	-	1	2	1
	현원	2	2	-	-	-	1	1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23	23	23	24	24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2	2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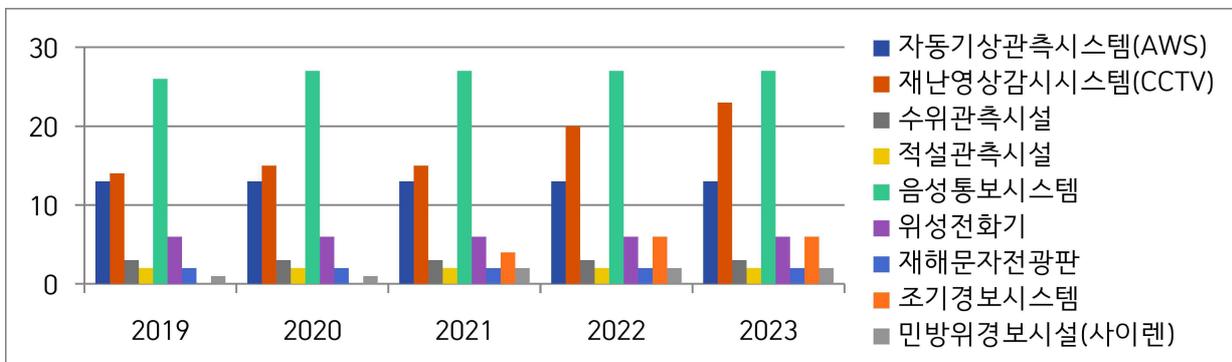
☞ 방재안전직 8급 정원 1명 증가(8급 1명 → 2명)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3	읍면별 각 1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2	벽계야영장 등 32대
수위관측시설	3	오소교, 백야교, 공단교
적설관측시설	2	의령읍, 봉수면
음성통보시스템	27	의령천 구름다리 등 27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	벽계야영장, 우애정
조기경보시스템	6	서암2지구 등 6개 지구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2	의령읍, 부림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3	13	13	13	1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4	15	15	20	23
수위관측시설	3	3	3	3	3
적설관측시설	2	2	2	2	2
음성통보시스템	26	27	27	27	27
위성전화기	6	6	6	6	6
재해문자전광판	2	2	2	2	2
조기경보시스템			4	6	6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	1	2	2	2



☞ 재난예경보시설, 조기경보시스템 현행화(개소 및 지구 등)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2023년 1기)	1.18.~1.2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3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2023년 4기)	3.6.~3.8.		2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2023년 1기)	3.14.~3.14.		1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2023년 7기)	4.10.~4.12.		1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2023년 8기)	4.24.~4.26.		1	
소하천관리과정(2023년 1기)	5.17.~5.19.		1	
저수지댐 안전관리과정(2023년 2기)	6.21~6.23.		1	
사회재난대응 및 수습과정(2023년 3기)	8.2.~8.4.		1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2023년 16기)	8.9.~8.11.		2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2023년 17기)	8.28~8.30.		1	
재해영향평가과정(2023년 3기)	8.30.~9.1.		1	
재난안전 신규관리자과정(2023년 6기)	12.4.~12.5.		1	
안전점검실무과정(2023년 6기)	12.4.~12.6.		2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12.12~12.13.	한국 방재협회	2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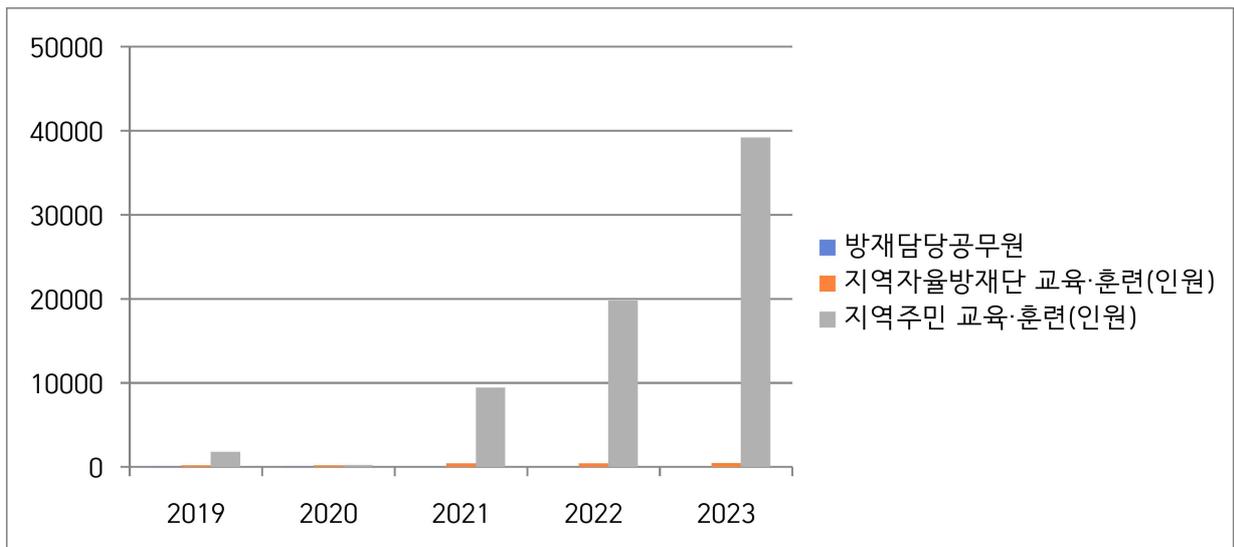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3년 자연재난 사전대비 자율방재단 서면 교육	4.18.(화)	재난 상황실	227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자료	안전관리과	
여름철 대비 자율방재단 영상 교육	5.23.(화)	온라인	227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자료	안전관리과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실	11.14.(화) ~11.17.(금)	각 읍·면 행정복지 센터	171	안전취약계층대상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 교육	안전관리과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9.5.(화)	의령군청	212	승강기 사고예방 및 대응 훈련	안전관리과	
소방 안전교육	'23.1월~12월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8,358	화재예방, 대피, 진압 등 소방 안전교육	의령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및 수상안전 교육	6.1.(목) ~6.29.(목)	의령군 일대	150	여름철 물놀이 주의사항 홍보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과	
작업장 안전교육	'23.1월~12월	의령군 일대	500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및 배수문 작업환경 안전교육	안전관리과	
교통안전 캠페인	'23.1월~12월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471	교통법규, 횡단보도이용, 승하차 안전교육	건설교통과	
전기·가스 안전교육	설, 추석 연휴	의령군 일대	50	전기 및 가스 사용법 등 교육	경제기업과	
재난상황요원 실무교육	10.11.(수)	의령군 일대	200	재난정보, 재난대피요령, 구호활동 교육	안전관리과	
기후성재난 대비 교육	'23.1월~12월	의령군 일대	188	태풍, 지진, 한파, 대설, 폭염 대비 자체 훈련 및 교육	안전관리과	
환경오염 관련 교육 및 캠페인	10.18.(수)	의령군 일대	50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분리교육	환경과	
정보통신 안전교육	2.6.(월) ~2.8.(수)	의령군 일대	16	통합관제센터 보안 교육	안전관리과	
폭력방지대책 및 예방교육	'23.1월~12월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1,512	청소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 및 아동학대 교육	주민생활 지원과	
식품안전 교육	'23.1월~12월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511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	건강증진과	
흡연·음주 폐해	10.13.(금) ~10.19.(목)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25,700	금연 및 흡연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근절교육	건강증진과	
감염병 대처 교육	5.1.(월) ~5.31.(수)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548	올바른 손씻기 교육 SI 차단방역 홍보	보건행정과 농축산유통과	
응급처치 교육	'23.1월~12월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213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교육	보건행정과	
자살예방 교육	'23.8월~12월	의령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510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건강증진과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64	32	30	28	20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199	210	442	442	454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792	247	9,449	19,805	39,189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고
		완료	진행	불가	
19	15	15	-	-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1월 안전점검의 날	겨울철 한파사고 예방 홍보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 홍보 설 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1.18.(수)	의령군 관내		
2	2월 안전점검의 날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안내 캠페인 해빙기 사고 예방 안내 캠페인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홍보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2.23.(목)	의령군 관내		
3	3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캠페인 대규모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3.28.(화)	의령군 관내		
4	4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캠페인 대규모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	4.18.(화)	의령군 관내		
5	5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캠페인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	5.23.(화)	의령군 관내		
6	6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캠페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홍보	6.23.(금)	의령군 관내		
7	9월 안전점검의 날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홍보 추석 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홍보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9.18.(월)	의령군 관내		
8	12월 안전점검의 날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홍보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 동절기 한파사고 예방 캠페인	12.18.(월)	의령군 관내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하종덕 의령부군수, 산불 대응태세 점검	의령 부군수, 산불 대응센터 등 5개소 시설 방문하여 산불초동진하 태세 점검	2023.01.10.	경남도민신문	
2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2023.01.13.	뉴스프리존	
3	의령군, 설 연휴 대피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집중 점검	2023.01.18.	브릿지경제	
4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홍보 총력	민간사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과 홍보교육 병행 실시	2023.01.24.	브릿지경제	
5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기간제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산림휴양과 기간제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2023.01.26.	경남일보	
6	의령 용덕면, 한파 대비 경로당 점검	한파 대비 경로당 시설 점검	2023.01.31.	경남일보	
7	경남 미래교육원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공사 현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2023.02.01.	신아일보	
8	의령군보건소,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년기 낙상에 의한 골절 및 부상 예방	2023.03.16.	경남일보	
9	산불예방 홍보캠페인실시	자굴산 등산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2023.03.20.	경남일보	
10	의령군 '재해예방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국비 15억원 확보	2022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2023.03.30.	뉴스핌	
11	의령군, 중대시민재해 예방 집단급식소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소관 집단급식소 2개소 안전점검 실시	2023.04.19.	신아일보	
12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홍보 캠페인 진행	2023.05.12.	metro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3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사업담당자, 도급·용역업체 대표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2023.05.20.	신아일보	
14	의령군, 전통시장 주변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홍보	2023.05.24.	국제뉴스	
15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	2023.05.24.	전국매일신문	
16	의령군, 산사태 대책상황실 10월 15일까지 운영	산사태 예방·대응활동 총괄 지휘 (단계별 비상근무조 가동 예정)	2023.05.25.	경남연합일보	
17	의령군,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87곳 집중 안전 점검	유곡출렁다리에서 집중안전점검 실시 내용 등 홍보	2023.05.30.	경남뉴스투데이	
18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점검 나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점검 홍보	2023.06.09.	경남에나뉴스	
19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5개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 목표	2023.06.26.	신아일보	
20	오태완 의령군수, 재해취약지 현장점검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지역 긴급 정비 점검	2023.06.28.	경남일보	
21	의령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관합동 도상훈련	대형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 훈련 실시	2023.06.28.	경남신문	
22	오태완 의령군수, 상포 배수장 긴급 방문... 응급 조치 완료	의령군수,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과 피해지역 방문 및 신속한 복구 지시	2023.07.18.	NEWSIS	
23	의령군, 산사태 취약지역 합동 점검	경남도 산림휴양과 합동,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점검 실시	2023.07.20.	경남매일	
24	오태완 의령군수, 서동생활공원 물놀이장 점검	의령읍 서동생활공원 물놀이장 현장 점검	2023.07.28.	경남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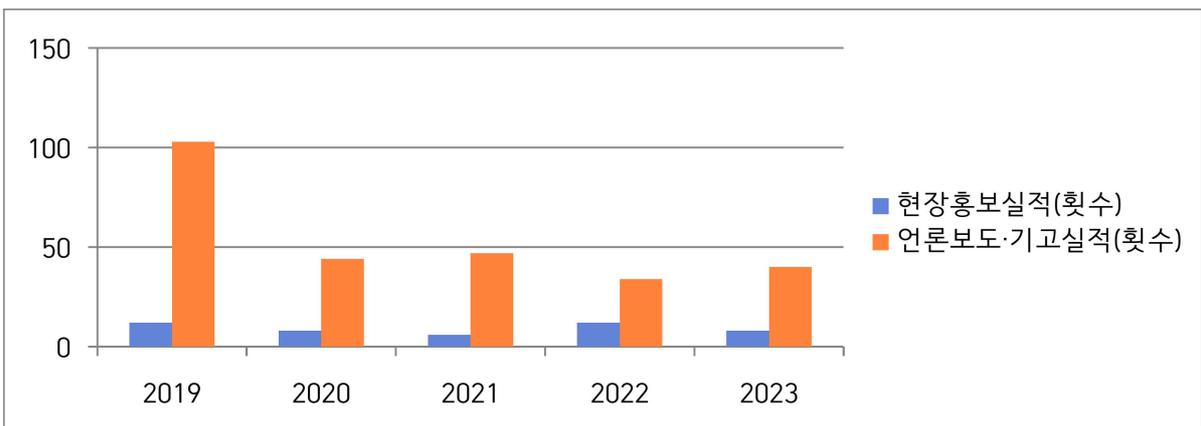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25	의령군, 폭염 대응 긴급 점검... 취약계층 보호책 논의	폭염 대응 T/F팀 운영	2023.08.04.	METRO	
26	오태완 의령군수, 태풍 '카눈' 복상 대비 긴급대책회의 주재	태풍 카눈 복상 대비 전부시장 긴급대책회의 실시	2023.08.08.	국제뉴스	
27	오태완 의령군수, 태풍 '카눈' 대비 긴급 현장 점검	태풍 카눈 대비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2023.08.10.	경남신문	
28	의령군, 2023년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및 협회 내용 홍보	2023.08.18.	경남뉴스투데이	
29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리치리치페스티벌 이색 홍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예방과 의령 부자축제인 리치리치페스티벌을 알리기 위해 이색 티셔츠를 입고 대대적인 홍보	2023.08.30.	경남일보	
30	의령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펼쳐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홍보	2023.09.07.	경남연합일보	
31	의령군, 2023년 제2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홍보	2023.09.08.	전국매일신문	
32	의령군 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진행	공무직 및 청원경찰 등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023.09.17.	경남도민신문	
33	의령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상담, 민간기업체 대상 안전문화 홍보 및 지원을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3.09.21.	전국매일신문	
34	의령군·의령소방서, 군청사 합동 소방 훈련 실시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등 재난 대비 역량 강화	2023.11.02.	쿠키뉴스	
35	의령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내용 홍보	2023.11.02.	경남일보	
36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교육 실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교육' 실시	2023.11.19.	경남도민신문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37	의령군,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실' 운영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 관련 찾아가는 교육 실시	2023.11.22.	경남신문	
38	의령군, 안전문화 확산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실시	의령전통시장, 신반시장 일대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을 전개	2023.12.01	신아일보	
39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의 날 실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요령 및 동절기 한파 예방 등 홍보 캠페인 실시	2023.12.19.	경남도민일보	
40	의령군, 재해예방사업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의령군, 재해예방사업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2023.12.27.	NEWSIS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장홍보실적(횟수)	12	8	6	12	8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03	44	47	34	40



☞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 시 각종 재난에 관련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활동을 전개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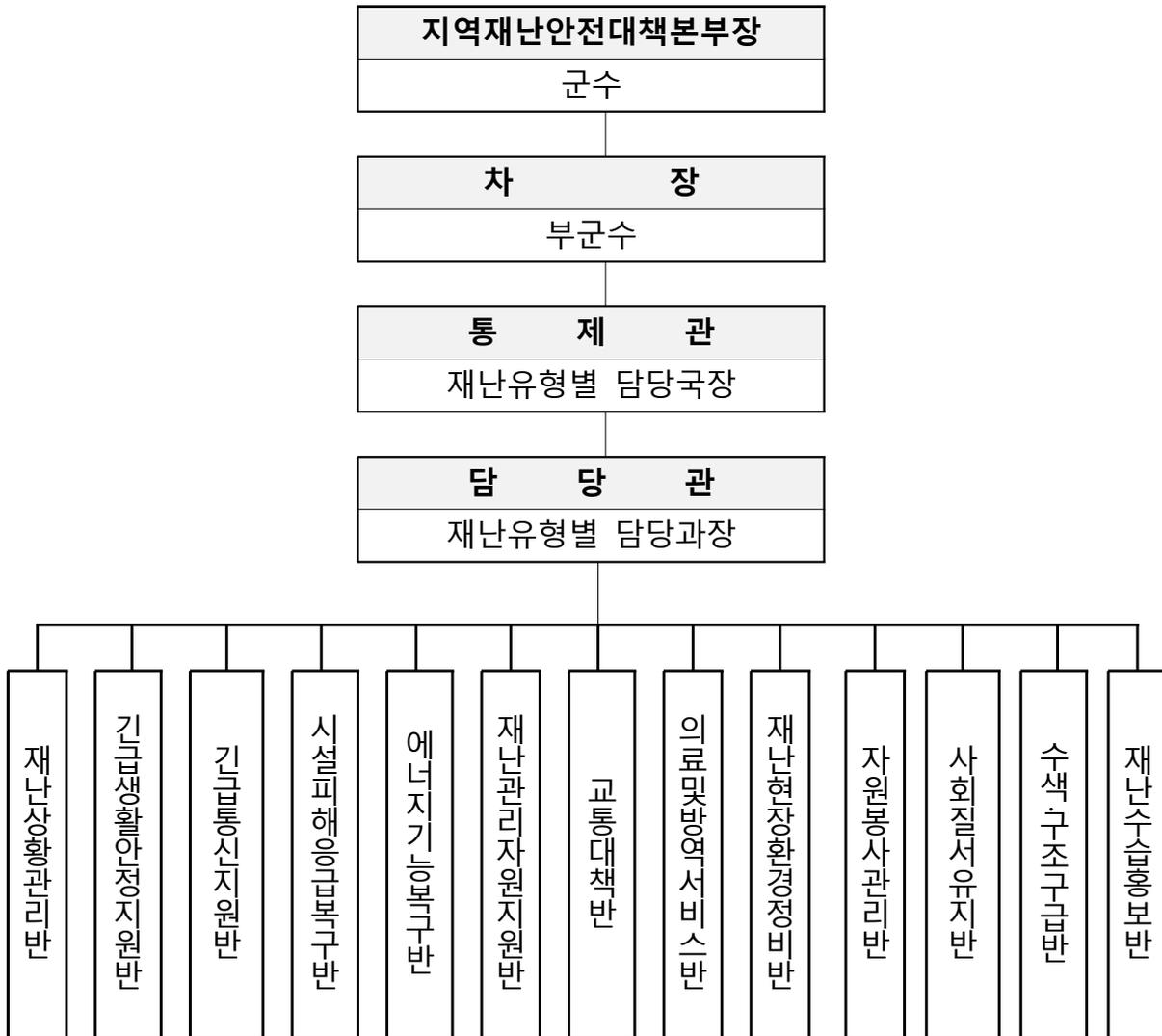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군수 • 위 원: 1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부군수 • 위 원: 9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본부장: 군수 • 차 장: 부군수 • 위 원: 13개 협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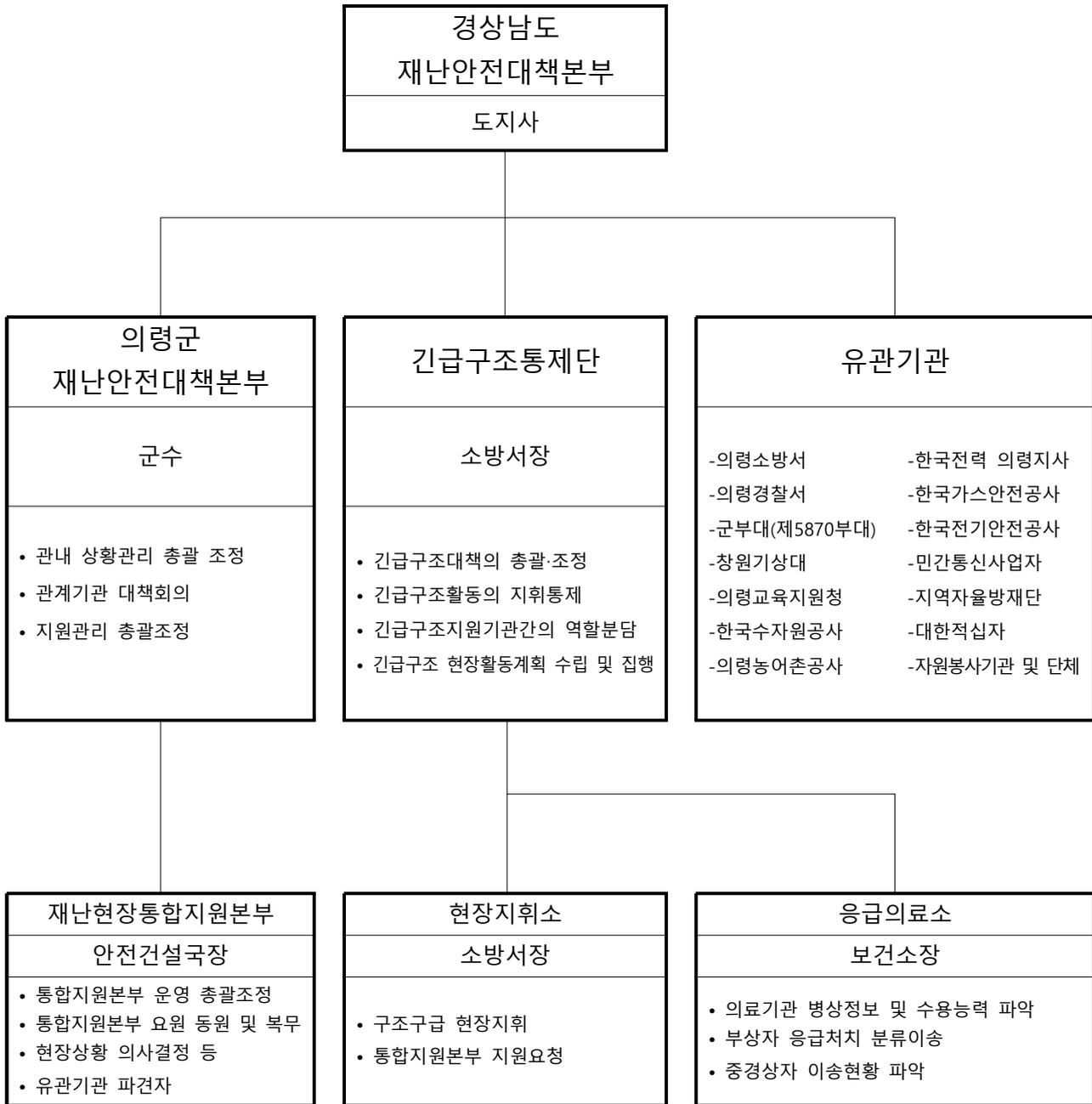


- 상황관리 총괄: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관리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사회복지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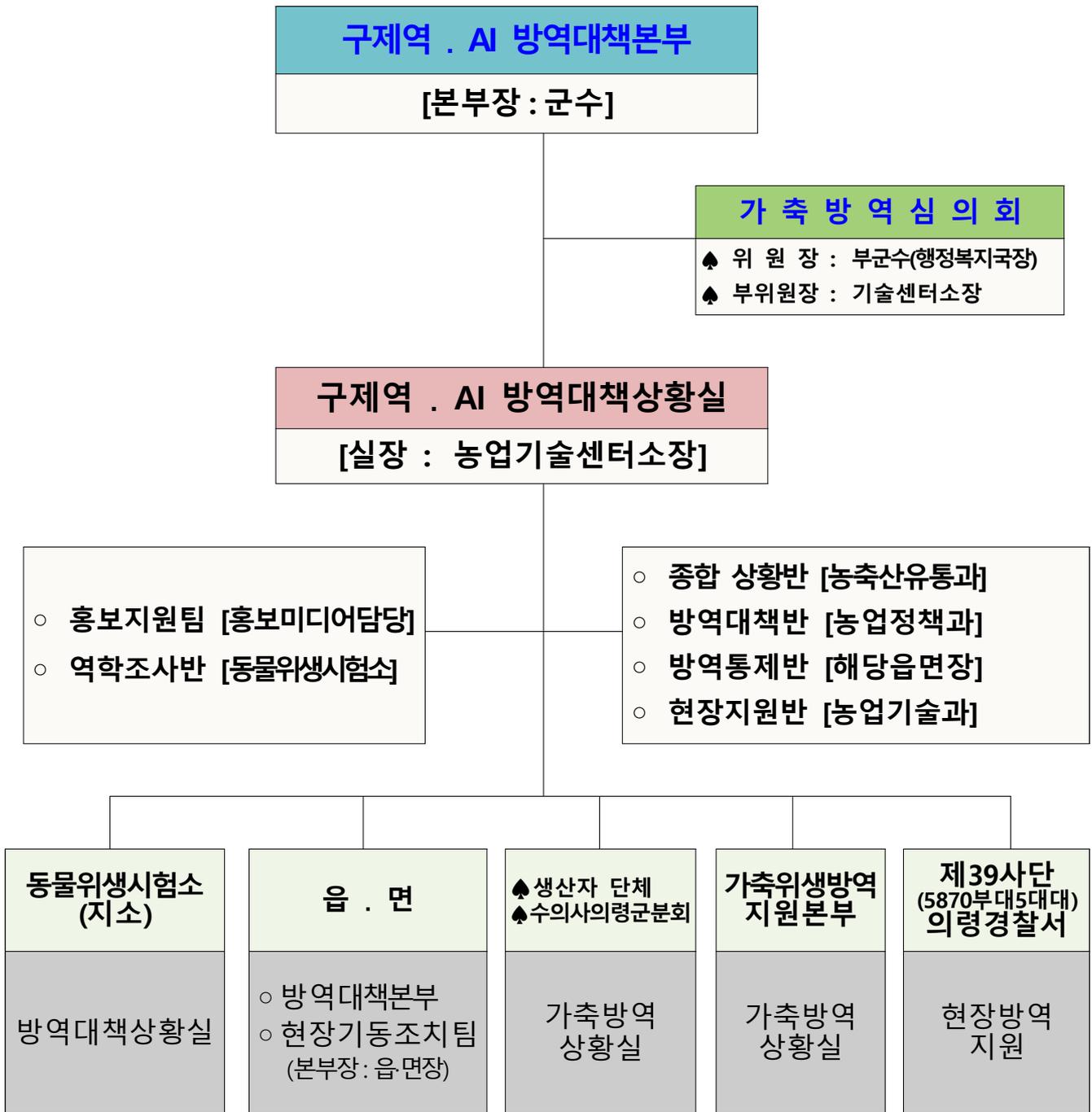
- 긴급 통신지원: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안전관리과, 민간통신사업자)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안전관리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경제기업과, 한국전력의령지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기획예산담당관)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건설교통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농축산유통과)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사회복지과, 행정과, 안전관리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기획예산담당관, 의령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의령소방서, 보건소)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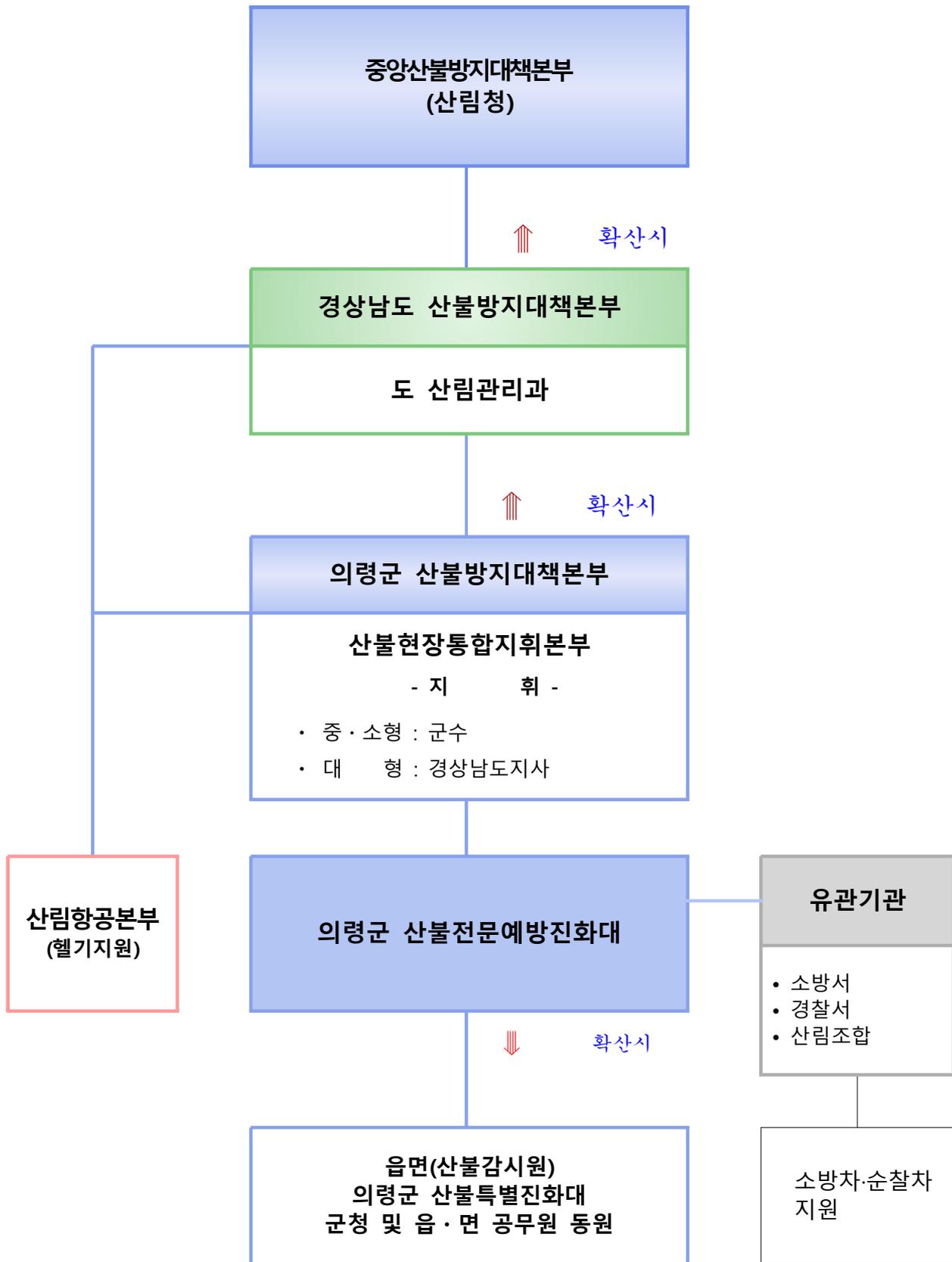
[의령군 풍수해 안전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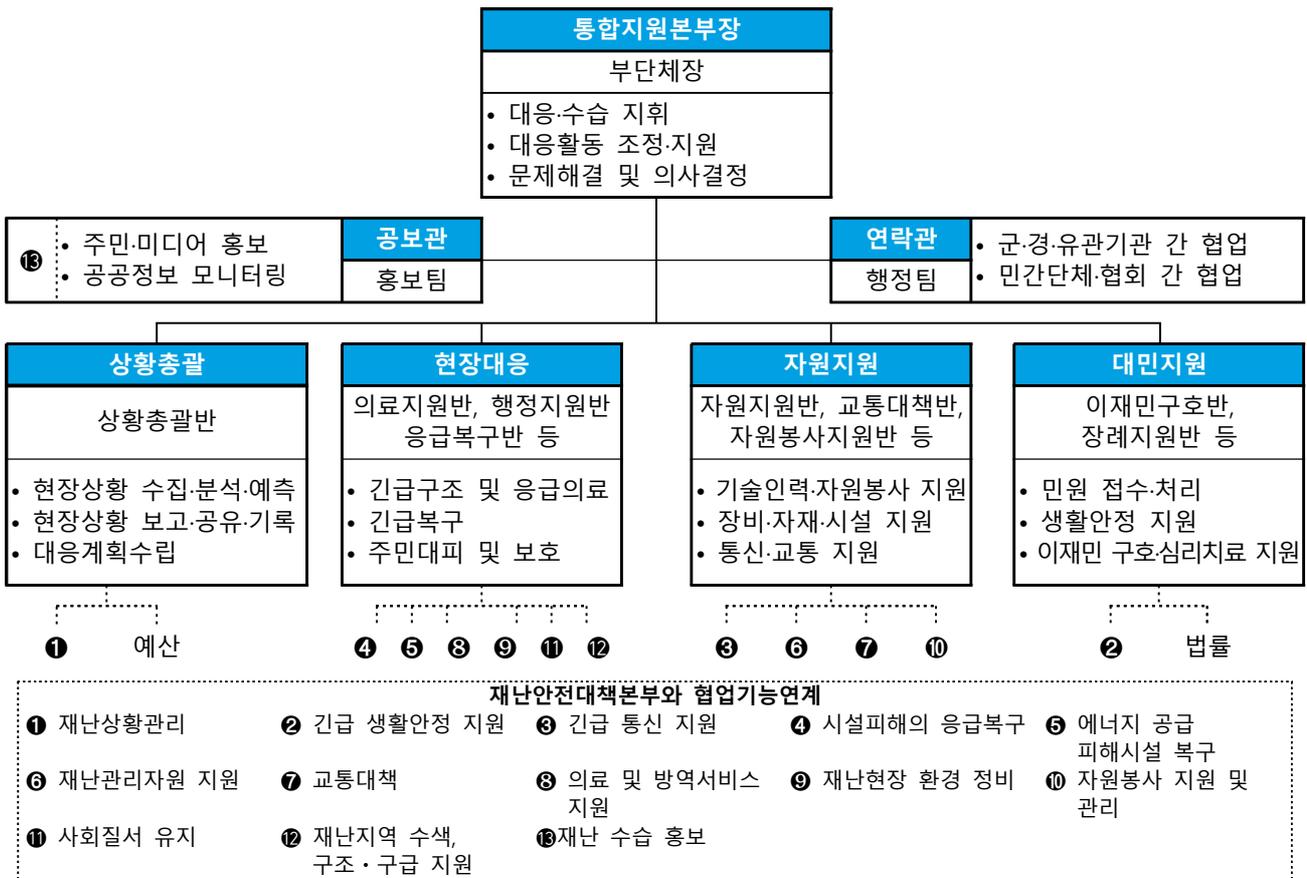
[AI 및 ASF 안전관리체계도]



[산불재난 안전관리체계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전화번호
의령군 보건소	○현장응급의료 운영, 환자이송, 관리, 방역 대책	570-4043
의령경찰서	○폴리스라인 설치, 주민소개, 사고원인 조사 및 인명구조 및 병력투입	570-0256
의령소방서	○탐지, 제독, 화재진화, 사고원인조사	570-9264
의령교육지원청	○관내 교육기관 피해사항 확인	570-7166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전기사고 안전대책	570-3237
KT함안지점	○사고현장 통신 안전대책	583-0060
육군제5870부대	○사고현장 불순분자 색출, 주변경계, 인명구조	585-1107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010.04.1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2.23.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7.10.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7.12.20.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20.12.1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화재예방 효과 증대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20.12.16.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0.12.16.	
의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 산업재해 예방 운영에 관련 사항 규정	2023.06.14.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련 사항 규정	2023.07.05.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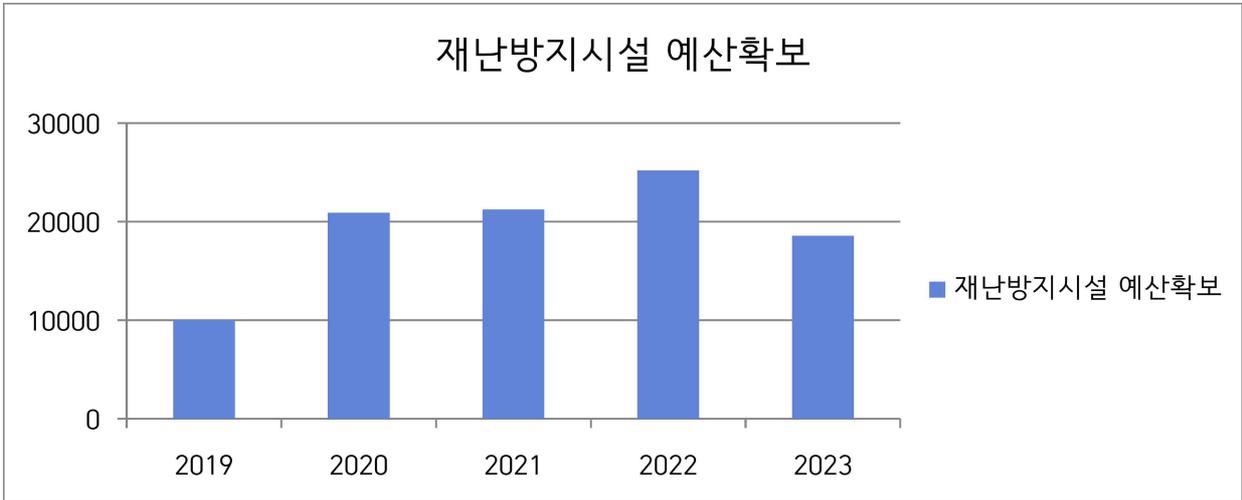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양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지정면 유곡리	저수지 정비 1식	2020.1.~ 2024.12.	2,400	재해예방
토곡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공류면 토곡리	저수지 정비 1식	2020.1.~ 2024.12.	3,270	재해예방
신전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대의면 신전리	저수지 정비 1식	2021.1.~ 2025.12.	2,640	재해예방
오동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정곡면 죽전리	저수지 정비 1식	2023.1.~ 2026.12.	1,990	재해예방
소상교 보수공사	용덕면 교암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4~ 2023.06	43	재해예방
음지교 보수공사	봉수면 서암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9~ 2023.12	37	재해예방
운계1교 보수공사	공류면 운계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9~ 2023.12	31	재해예방
운계2교 보수공사	공류면 운계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9~ 2023.12	32	재해예방
엄현교 보수공사	유곡면 칠곡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9~ 2023.12	44	재해예방
운곡교 보수공사	용덕면 운곡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9~ 2023.12	24	재해예방
공소교 보수공사	공류면 평촌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9~ 2023.12	82	재해예방
당동교 보수공사	유곡면 당동리	교량 보수보강 1식	2023.09~ 2023.12	18	재해예방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의령읍 남산천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1식	2021.01.~ 2023.12.	271	재해예방
2023년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	의령군 관 내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 1식	2023.01.~ 2023.12.	400	재해예방
2023년 환경기초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	의령군 관 내	환경기초시설 18개소 노후시설 개선 1식	2023.01.~ 2023.12.	963	재해예방
서암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봉수면 서암리	하천정비 1.0Km	2022.06.~ 2024.06.	1,580	재해예방
봉곡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정면 태부리	하천정비 0.6km	2023.06.~ 2025.06.	350	재해예방
감암소하천정비사업	부림면 감암리	하천정비 0.7km	2021.10.~ 2023.12.	577	재해예방
아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낙서면 아근리	사면정비 L=255m	2021.01.~ 2024.07.	2,400	재해예방
신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유곡면 신촌리	사면정비 L=1.0km	2022.01.~ 2026.12.	1,408	재해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0,020	20,901	21,233	25,186	18,560



☞ 서동우수저류시설 정비공사(2019~2022)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확보 감소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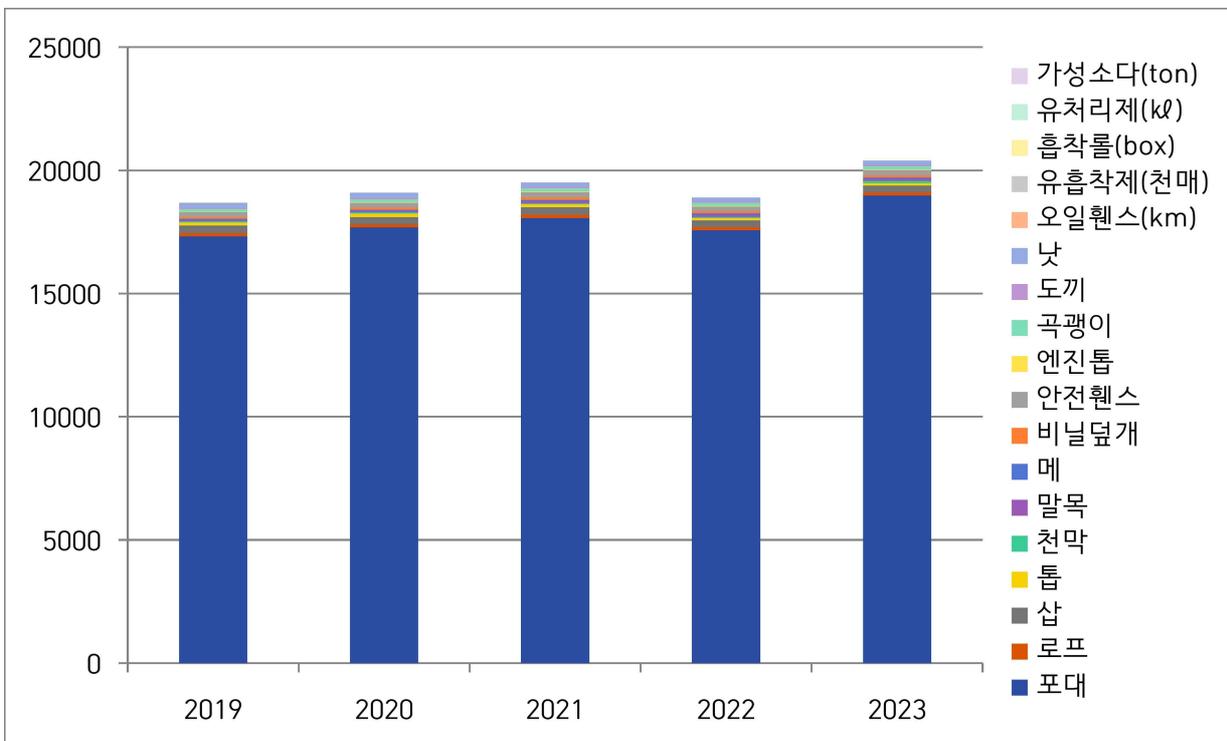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웬스	유흡착재	흡착롤	유처리제	가성소다
	km	매	box	kl	ton
총계	0.52	5,000	5	0.216	0.375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포대	17,320	17,680	18,065	17,575	18,985
로프	138	135	139	129	129
삽	301	289	297	268	268
톱	126	137	114	95	95
천막	41	50	50	40	89
말목	70	60	96	96	96
메	44	49	46	47	47
비닐덮개	74	94	97	91	93
안전헬스	188	188	203	186	204
엔진톱	23	24	26	25	27
곡괭이	96	117	130	130	130
도끼	61	67	70	67	67
낫	204	200	172	146	164
오일헬스(km)	0.34	0.34	0.4	0.4	0.52
유흡착제(천매)	3.6	3.6	4.6	4.6	5
흡착롤(box)	5	5	5	5	5
유처리제(kℓ)	0.24	0.216	0.216	0.216	0.216
가성소다(ton)	0.175	0.175	0.175	0.175	0.375



☞ 수방자재 확보(PP포대 등)에 따른 방재물자 증가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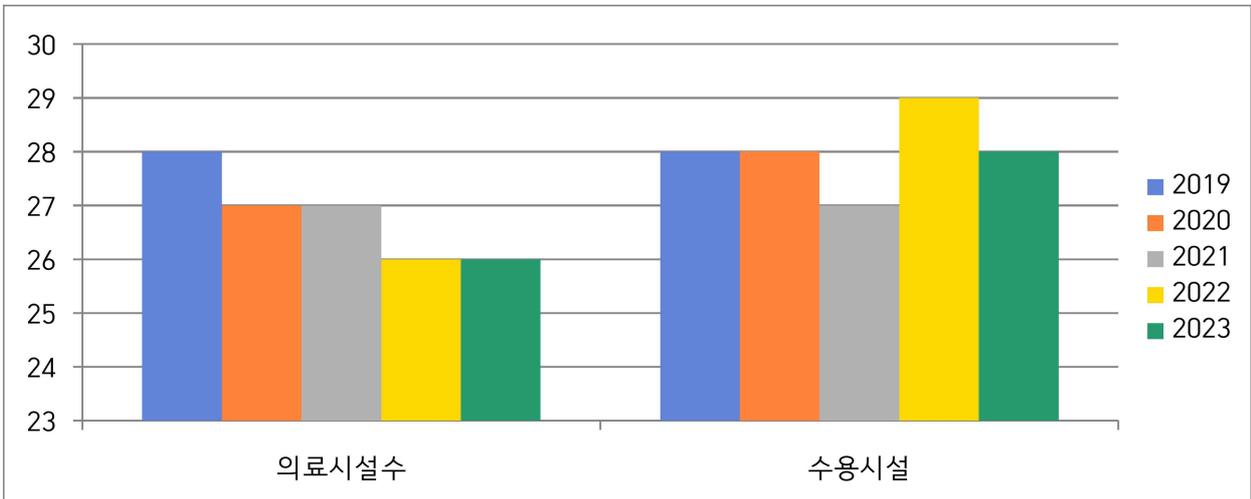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26	51	68	5	446	4
병 원	3	10	35	3	446	4
보건소	1	18	30	2	-	-
기 타	22	23	3	-	-	-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28	9,950	13	5,497	5	521	0	0	8	3,223	2	709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시설수		28	27	27	26	26
수용시설	개소	28	28	27	29	28
	수용인원	10,348	10,603	10,348	10,011	9,950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 공작차	배연차	구급차	구명 보트	구명 동의
총계	50				6	2	42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견인차	청소차
총계	10		4		2		4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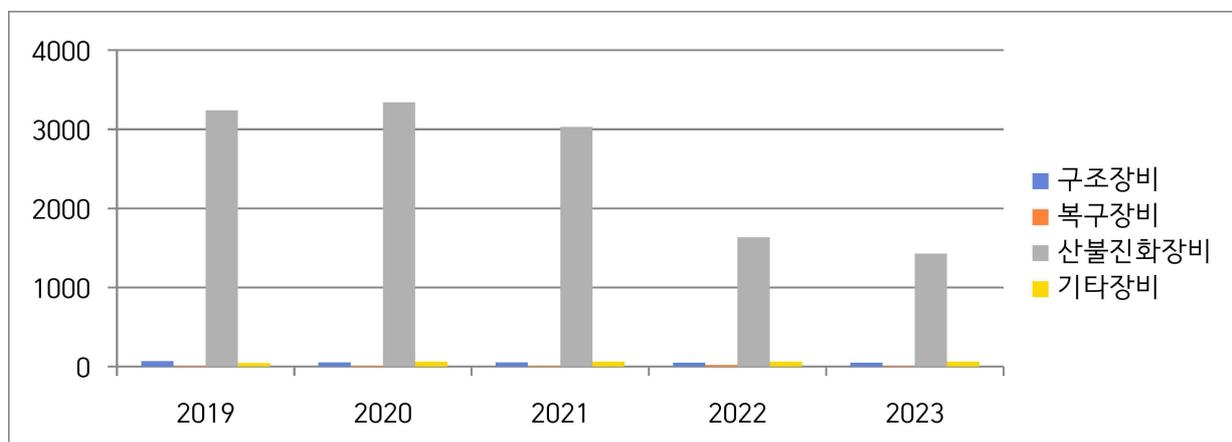
구분	계	헬기 보유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동력 펌프	산불 지휘차	등짐 펌프	갈퀴	진화 도구
총계	1,430	0	1	11	17	1	400	1,000	0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퓨터 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
총계	61	1	2	57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조장비	72	55	55	49	50
복구장비	8	14	14	21	10
산불진화장비	3,243	3,342	3,031	1,636	1,430
기타장비	44	60	61	61	61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계	산림
인원	91	33	20	19	9	-	3	-	7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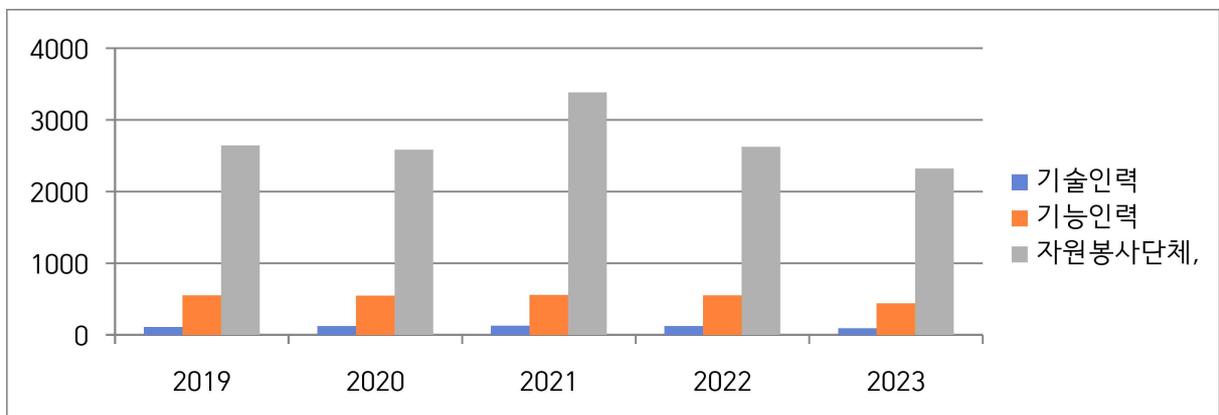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 운전	중기 정비
인원	441	64	49	101	-	-	58	-	166	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기타	적십자 봉사회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 회	여성 단체 협의회	자원 봉사 협의회
인원	2,322	560	30	-	250	227	45	27	985	198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인력	111	124	126	125	91
기능인력	551	547	555	553	441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2,645	2,586	3,385	2,624	2,322



☞ 기술·기능 인력 및 자원봉사단체 등 현재 관내 인력수로 현행화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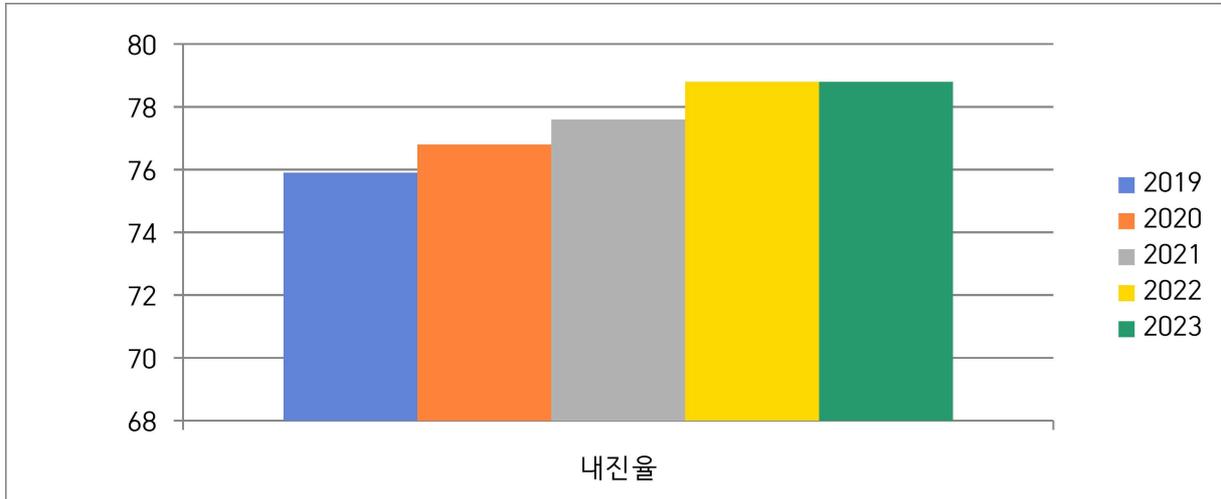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 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2023.05 2023.09	행정안전부	최우수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3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85	67	0	0	78.8
공공건축물	30	14	0	0	46.6
도로시설물	48	48	0	0	100
수도시설	4	4	0	0	100
공공하수 처리시설	2	0	0	0	0
병원시설	1	1	0	0	10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내진율	75.9	76.8	77.6	78.8	78.8



☞ 예산부족으로 내진율 확보 미비('24년 내진관련 특교세 신청 완료)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지역 :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 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해당없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집행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411백만원	567백만원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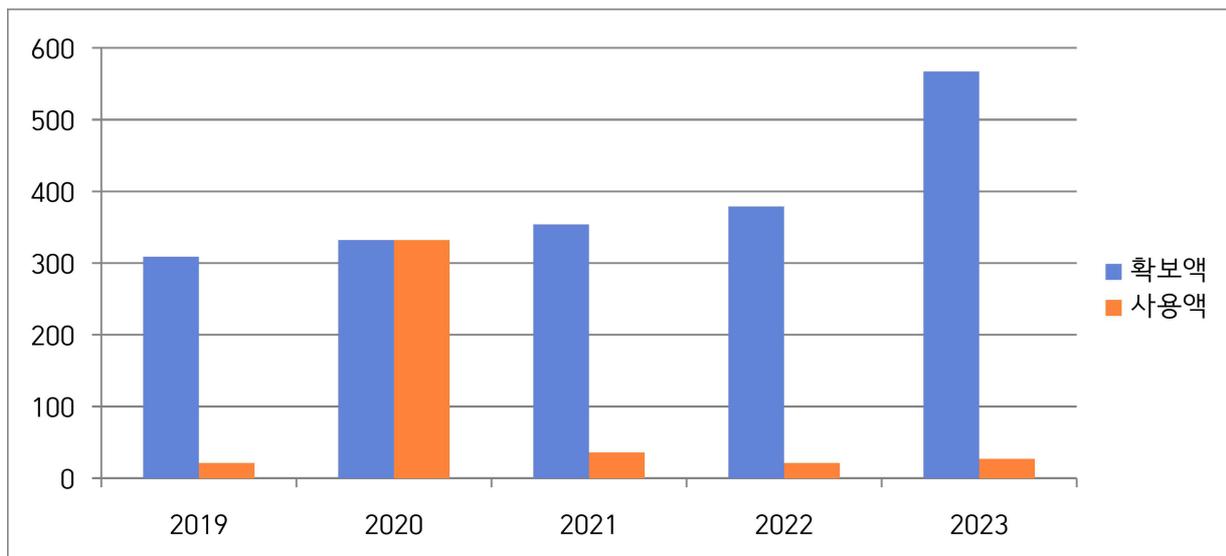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2,737백만원	3,780백만원	138%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확보액 (당해연도)		309	332	354	379	567
사 용 액	합 계	219	3,323	366	210	271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69	241	136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150	742	230	210	271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2,34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부서	작성년 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풍수해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지진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대형화산폭발 시 행동요령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가뭄발생 시 현장조치 요령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산림휴양과	2023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산림휴양과	2023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육상 화물수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자리경제과	2023	육상화물수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대규모 수질오염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3	대규모 수질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댐붕괴 현장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하수도과	2023	댐붕괴 발생시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자리경제과	2023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도시재생과	202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요령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산유통과	2023	가축질병 발생시 행동요령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23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자리경제과	2023	전력수급 장애시 행동요령
보건의료행동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23	보건의료 행동 요령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하수도과	2023	수질오염 등 식용수관련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가스수급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자리경제과	2023	가스공급중단 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저수지 붕괴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과	2023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위험물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위험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낙뢰 발생 시 행동요령

행동매뉴얼 명	소관 부서	작성년 도	매뉴얼 주요내용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관리과	2023	공연장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조류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하수도과	2023	녹조 발생시 행동요령
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3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육상 화물수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대규모 수질오염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댐붕괴 현장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0.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보건의료행동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09.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가스수급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저수지 붕괴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1.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위험물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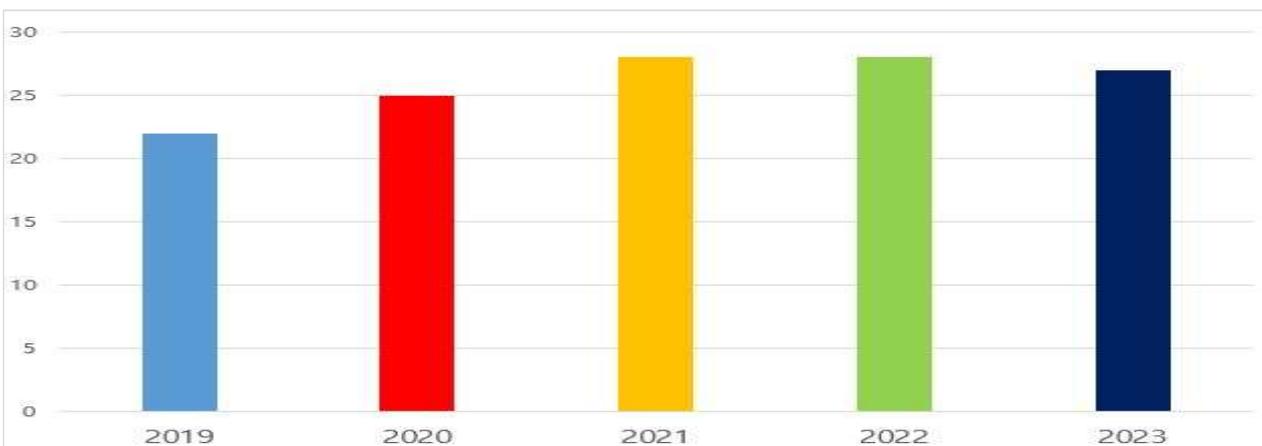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조류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12.	제개정 신규양식 반영 등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매뉴얼	2023.10.31.	(안전한국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붕괴에 따른 재 난 상황 대처 현장 훈련 및 토의훈련	지진 등 복합재난이 발생되는 경우 등을 대비한 통신체계의 다양화가 필요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뉴얼 수	22	25	28	28	27



☞ 2023년부터 문화재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외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등급]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종합등급
진단결과	E	B	B	B

*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자연재해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지자체 실적 확인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재해위험요인** : 재해발생 빈도, 사회적·지역적 취약성 진단
- **예방대책추진** : 방재대책에 관한 계획·정책 수립 추진 등 행정적 예방 안전도 진단
- **예방시설정비** : 재난예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등 구조적 안전도 진단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 급	미실시	C	미실시	B	B

☞ 의령군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지속 시행 중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군민안전보험 홍보

- 피보험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험기간: '24. 1. 15. ~ '25. 1. 14. (1년)
- 보장내용: 폭발, 화재, 붕괴, 감염병 사고 등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 보험료: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의령군민 전체 자동가입

○ 풍수해보험사업

- 신청자: 주택소유자, 세입자
- 가입방법: 의령군 안전관리과, 읍·면사무소
- 비용지원: 풍수해보험료 70~92% 국비지원 (개인마다 차이 있음)
- 혜택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험료 면제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의령군 안전관리과 (전화 : 055-570-341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의령군 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주요도로 기준 명확화
- 계획위원회 상정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 및 재심의 제한 기간 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및 일부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 오탈자 정비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도로관련 기준 명확화
(안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계획위원회 동일한 안전에 대한 심의 제한 규정 신설
(안 제50조 제6항, 제7항, 제8항)
 - 동일안전에 대한 심의 횟수 최초 심의 포함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심의회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전은 3년 이내 동일안전으로 재상정할 수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사항 반영
 - 별표 3 ~ 별표 22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령군 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 2) 제출방법: 전화, 서면, FAX, 직접방문 등
- ※ 전화 055-570-3502, FAX 055-570-3509

-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의령군 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 례 내 용	찬반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요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

제29조제24호 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한다.

제50조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 회의 운영은 안전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안전처리 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안전이 한 건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안전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동일한 안전에 대한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 시에는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별표 3부터 별표 2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생략)</p> <p>1. 주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2.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3. (생략)</p> <p>24. 계획관리지역에서 <u>휴게음식점</u></p>	<p>제18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주요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도로</p> <p>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p> <p>-----</p> <p>-----</p> <p>-----</p> <p>-----</p> <p>-----</p> <p>-----</p> <p>-----</p> <p>1. ~ 23. (현행과 같음)</p> <p>24. ----- <u>휴게음식점</u></p>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
4와 같다.

제50조(회의운영) ① ~ ⑤ (생략)

⑥ 회의 운영은 안전거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안전처리 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이 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안전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로 한정한다. 다만, 안전을 보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

제50조(회의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의 운영은 안전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안전처리 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안전이 한 건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안전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동일한 안전에 대한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 시에는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내 동일한 안전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임시예방접종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임시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대상(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임시예방접종 지원절차(안 제4조)
 - 라. 임시예방접종 지원비 환수조치(안 제5조)
 - 마.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 52151)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055-570-2872(팩스 055-570-4018)
- 전자우편: hj713@korea.kr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55-570-2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의령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유·무료): 연1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회
3. 백일해: 1회
4. B형간염(유료): 3회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바.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

3. 백일해

가.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의 배우자 및 조부모
 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B형 간염

가. 19세 이상의 성인
 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다만, 「국적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임시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완료자

제4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거부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임신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임신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임신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신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의령군수

-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4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① 국유림 및 공유림
- ②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③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 대상 산지에 포함
- ④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⑤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⑥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⑦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⑧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⑨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과중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⑩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①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①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①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②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립 업
<p>①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u>농촌*</u>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면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p> <p>②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p>	
<p>①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p> <p>②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p> <p>③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p> <p>④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p> <p>⑤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p>	<p>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u>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u></p> <p>②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p>

나-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업인	농업법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업인	농업법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기준
①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③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⑤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⑦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 임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❶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❷~❹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4.1.1~'23.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①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설계도·서·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②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중중토지) ① 중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중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중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중회의록, ② 중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중(중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단, 계약기간 만료일이 '24.9.29. 이전인 경우에는 '24.9.30.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 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임대계약서·일용직 고용·농자재 구매·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p>5. 승계대상자 공통</p> <p>※ 해당자 필수</p>	<p>※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p> <p>▶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p> <p>①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p> <p>➢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p> <p>②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p> <p>➢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p>
<p>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p> <p>※ 해당자 필수</p>	<p>▶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p> <p>①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p> <p>②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p> <p>【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p> <p>➢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p> <p>➢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p> <p>▶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p> <p>①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p> <p>②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p> <p>【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p> <p>➢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p> <p>➢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p> <p>➢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p> <p>➢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p> <p>*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p> <p>*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 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p>

구 분	제출서류
<p>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생산업 ※ 해당자 필수</p>	<p>▶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숲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②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③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④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p>▶ (수액과 죽순) ① 파종 또는 식재하고, ②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p>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p>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p>	<p>▶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p> <p>▶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 (육림업) 임 내 3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p>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공통 ※ 해당자 필수</p>	<p>▶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②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③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 (<https://www.foco.go.kr>)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리모델링·보수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현행)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 (개정) 「의령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및 한도: 안 제4조(경로당 지원), 제5조(마을회관 지원), 제6조(경로당 지원의 한도), 제7조(마을회관 지원의 한도)

4. 조례개정안: 붙임2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

(2) 전 화: 055-570-2233, fax: 055-570-220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fax, 직접방문 등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철거”란 기존 건축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8. “시설개선사업”이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 등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운영 등의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의 대상과 지원범위
2.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대상과 지원범위(증축 제외)
2. 그 밖에 마을회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시설 신축 사업비(다만, 부지 비용은 제외)
2. 경로당 시설 증축·리모델링·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3. 경로당의 철거비용
4.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5.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비품의 범위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마을회관 지원) ① 군수는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마을회관 리모델링
2. 마을회관 보수

제6조(경로당 지원의 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축의 경우: 2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
3.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7조(마을회관 지원의 한도)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
2.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제8조(등록 및 지원 제한 등) ① 경로당은 행정마을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되, 동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 지원과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축·리모델링·증축의 경우: 5년
2. 개수·보수의 경우: 3년

제9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